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35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일

발의자 : 박선미 의원

1. 제안이유

- 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이 제정, 시행(2024. 7. 26.) 중임.
- 나. 이에 따라 하남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사업 및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안 제4조 및 제5조)
- 라. 단체의 육성·지원 및 위탁(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하남시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 국악이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하남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국악진흥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7호, 2023. 7. 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026. 2. 13.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17	문화관광교육국 문화예술과	
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4-15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3	경기도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2-31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2-24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역사과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1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31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2021-06-01	문화체육실 문화정책관	
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08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11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30	인구정책국 문화관광과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03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5-2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14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5-02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1-1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2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1-07	문화예술과	